

일련번호	1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재)안산문화재단	처분요구일자	통보받은 날	회신기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안산시 주의

제 목 감사업무 수행 소홀
 관련부서(기관) (재)안산문화재단
 내용

1. 업무개요

(재)안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자체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재단 업무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2. 감사실시계획 수립 지연 및 통보 업무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재단 「내부감사규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부서,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감사의 범위, 감사사항,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해의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이사장(안산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매년 1월 15일까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재단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간 감사계획 수립을 지연하였으며, 이사장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표1] 감사실시계획 수립 및 통보 현황 <생략>

2. 감사결과의 공개 업무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재단 「내부감사규정」 제26조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감사 종료 후 종합 감사 등의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감사결과를 감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재단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감사결과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 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재단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부감사규정」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2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재)안산문화재단	처분요구일자	통보받은 날	회신기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안산시 개선요구

제 목 산업안전위원회 미운영
 관련부서(기관) (재)안산문화재단
 내용

1. 업무개요

(재)안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증진하여 근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재단의 재산을 보존하고 도모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을 같은 수로 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정된 재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 및 제15조, 제16조에도 산업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재단에서는 관련 법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산업안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운영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9를 보면 법의 취지상 위험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보여진다고 하면서 안산문화재단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설비 등을 취급하는 제조 및 건설업체가 아닌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고, 안산문화재단은 상시근로자가 100명 미만으로 일반제조업체에 비해 위험도가 높지 않으며, 분기마다 회의를 실시해야 할 정도의 현안사항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안산문화재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한산업안전협회와 대한산업보건협회에 대행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시행(매달 2회 안전점검 실시, 매달 1회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취지에 맞게 안산문화재단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적절한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9에 따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재단에서는 상시근로자가 100명 미만이기 때문에 산업안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지만, (재)안산문화재단은 감사일 현재 현원이 88명¹⁾이고 정원은 104명²⁾으로 언제든지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재단 경영공시 자료 인력현황에 따르면 2022년에서 2023년까지의 현원은 각각 106명, 103명³⁾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재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이 규정 및 각종 안전보건기준의 작성 및

1) 현원 : 88명(일반직 54명, 무기계약직 34명)

2) 정원 : 104명(일반직 62명, 무기계약직 42명)

3) 자료출처 : <https://www.cleaneye.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사이트

- 2022년 : 106명(일반직 53명, 무기계약직 38명, 기간제 15명)

- 2023년 : 103명(일반직 53명, 무기계약직 35명, 기간제 13명)

- 2024년 경영공시 자료는 2025. 7. 31. 공개 예정

변경에 관한사항,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이므로 현안사항이 없다고 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운영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조치할 사항 (재)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① 재단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산업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 ② 산업안전위원회 구성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일련번호	3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재)안산문화재단	처분요구일자	통보받은 날	회신기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안산시 시정요구

제 목 물품관리 소홀
관련부서(기관) (재)안산문화재단
내 용

1. 업무개요

(재)안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단 「물품관리규정」에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재단 「물품관리규정」 제6조에 따르면 물품관리관은 경영지원본부장으로 하며 물품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및 통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물품의 보관, 출납유지 및 기록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분임물품출납원은 각 부서장으로 하며 물품의 출납, 운용, 관리, 보관 및 적절한 유지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물품관리규정」 제8조에 따르면 물품은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고 있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취득단가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10조에 따라 물품관리자는 물품의 취득, 출납 또는 운영에 관한 물품관리카드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물품관리규정」 제29조에 따라 재단의 모든 물품의 실제수량과 장부

상의 수량을 대조 확인하는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재물조사 결과보고서를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정기재물조사 시 재단의 모든 물품의 실제수량과 장부상의 수량을 대조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경영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재단에서는 취득단가 및 내용연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비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정기재물조사 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 1] “물품 등록 누락 현황”과 같이 □개의 물품에 대해 물품관리카드를 작성하지 않아 정기재물조사 시 실제수량과 장부상의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등 정기재물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 물품 등록 누락 현황 <생략>

관계기관 의견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정확하고 면밀한 정기재물조사를 통하여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30만원을 초과하는 비품의 물품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① 물품관리카드를 작성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 물품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시정)
- ②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품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물품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재)안산문화재단	처분요구일자	통보받은 날	회신기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안산시 문책 요구

제 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관련부서(기관) (재)안산문화재단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을 받는 단체는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2022. 5. 19. 시행) 제2조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공공기관’으로 정의하고,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임직원을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자 자신 또는 「민법」 제7791)조에 따른 가족을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에 따르면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이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하여야 하고, 법 제2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임직원은 법과 재단의 규정 및 규칙을

1)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준수하여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표이사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소속 직원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26조 및 「규칙」 제25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재단의 직원 A는 감사일 현재 약 〇년을 재단에 근무하면서, 이번 감사대상 기간(2022. 7. ~ 2025. 4.) 이전인 2016~2019년 기간에 [표1]과 같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B가 운영하는 광고업체인 ‘☆’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표1] A가 한 ☆와의 계약(거래) 내역 <생략>

이후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이하 “사적이해관계자”라 한다)와의 계약(거래)은 없었다. 그러나, A는 [표2]와 같이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총 *차례 사적이해관계자와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였다.

[표2] 사적 이해관계자 거래 현황 <생략>

위와 같이 A는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아는 상태에서 사적이해관계자와 관계되는 직무를 *차례 수행하면서도, 그 사실을 재단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 신청한 적이 없다. A가 위의 사적이해관계자와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한 때는 법 및 재단의 규정·규칙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었던 시기였고, 재단은 2024년 10월 경 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였고 A는 이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A의 위 *차례의 행위는 법 및 재단의 규칙을 위반한 비위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관계자 의견 A는 2025. ○. ○. 문답에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생략>

감사자 검토 의견

법 제5조제1항의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신청은 해당 공직자의

법에 대한 인식 및 관련 세부 규정에 대한 이해 정도와 무관하게 모든 공직자가 지켜야 할 공적 의무이다. A가 문답에서 주장하는 사적이해관계자와의 거래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불가피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설사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거래 이후라도 신고·회피 신청 등 적정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따라서 A가 2025. ○. ○. 문답에서 인정하였듯이, 위 *건의 거래에서 A는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

다만, A가 문답에서 한 ‘사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일처리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 제작·구입 거래 중 일부에 불과한 소액 거래를 사적이해관계자와 하였고, 재단의 다른 직원 등에게 거래를 종용하거나 강권한 적은 없다’는 진술은, 사적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건수(많지 않음)·빈도(산발적)·금액(소액)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A가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사적 이해를 적극적으로 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문책요구 양정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제1항(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위반은 재단 「임직원 이해충돌방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위배되어, 재단 「인사규정」 제49조(징계사유) 및 「직원 상벌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1] 1. 성실 의무 위반 및 5.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재)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관련자에게 「인사규정」 제49조 및 「직원 상벌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1] 1. 성실 의무 위반 및 5.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경징계 이상)”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책)

일련번호	5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재)안산문화재단	처분요구일자	통보받은 날	회신기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안산시 시정 요구

제 목 위원회 심의 · 심사 수당 지급 부적정

관련부서(기관) (재)안산문화재단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표]와 같이 「위원회 등 수당 지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재단에서 개최하는 각종 위원회 · 회의 · 심사 · 심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1회에 8만원, 심사수당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표] 수당 등 지급 기준(일부 발췌)

구분		단가	비고
각종회의	재단 이사회	200,000원	- 1일 1회 기준
	재단 인사위원회	100,000원	- 2시간 이내 기준
	각종 위원회	80,000원	- 2시간 초과 : 3만원 추가
	서면심의	각종 회의단가의 50%	- 서면심의는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에 한한다
심사수당	온라인, 서면심사	100,000원	- 의견서, 보고서 등 첨부
	각종 심사시	최초2시간 200,000원 초과 매시간 50,000원 일 최고 400,000원 이하	- 1시간 미만, 소량의 심사시 감액 지급 가능
면접/서류심사	1급이상 채용	반일 전일	200,000원 300,000원
	2급이하 채용	반일 전일	150,000원 250,000원

※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 출자 · 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르면 해당 기관에 출자 · 출연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 무보수 비상근 임원 여부에 상관없이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수당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안산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위원회 참석비는 기본 2시간에 8만원(온라인 및 서면 5만원)을 지급하고, 2시간 초과시에는 3만원(온라인 및 서면 2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안산시 소속 공무원에게는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럼에도 재단에서는 ◎ 전시공간 지원사업 심의·심사 당시 안산시 소속 공무원인 A에게 심사수당 *건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안산시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관련하여 안산시 소속 A에게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음을 인정하면서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명확히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안산시 공무원에게 착오 지급한 심사수당 ***,***원은 회수 처리 후 그 결과를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6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재)안산문화재단	처분요구일자	통보받은 날	회신기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안산시 권고

제 목 「직원 상별 규칙」에 관한 사항

관련부서(기관) (재)안산문화재단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재단의 「직원 상별 규칙」에서 징계양정 및 징계의 감경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표]와 같이 징계처분 하였으며, 현재 재단의 인사위원회는 당연직 3명(재단 임직원 2, 공무원 1), 선임직 이사 2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재단의 징계 현황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직위해제, 그에 따른 임금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등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 규정 등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징계 제도 공정성

1) 1. 모범사원으로 선발된 공적
2. 시장·도지사·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이사장 표창을 받은 공적
4.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경미한 과실이 발생되었을 때
5. 스스로 반성하며 개진의 정이 뚜렷할 때

제고 방안」(의안번호 2024-604호)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징계 감경 남용, 징계 감경 제한 및 모호한 징계 감경 사유에 의한 과도한 징계 감경,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객관성 결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표창에 의한 중복 적용 제한 및 유효기간 설정, 징계 감경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 징계위원회의 외부 위원 참여 비율 확대(1/2 이상) 및 제척·기피·회피 운용 강화 등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의안번호 2012-58호)에서 인사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이 미흡하고, 징계 기준의 미비로 부패 행위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 및 자의적 징계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인사위원회 외부 위원을 1/2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였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참고하여 직원 상별 규칙을 정하여야 하고, 직원 상별 규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징계 의결 사항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럼에도 재단에서는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경미한 과실이 발생되었을 때’, ‘스스로 반성하며 개전의 정이 뚜렷할 때’ 등과 같이 모호한 징계 조항을 적용하고, 인사위원회의 외부 인원 구성 비율에 대하여 ‘3인 미만’이라는 상한선만을 규정하고 외부 위원의 비율이 1/2에 현저하게 미달한 상태로 운영하는 등 재단의 「직원 상별 규칙」 운영 및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구성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안산문화재단 직원 상별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감경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원 상별 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인사위원회 외부 인사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외부 위원의 비율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① 공직유관단체로서 직원 상벌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직원 상벌 시행규칙」 제15조제1항4호, 5호에서 불명확한 징계 감경 사유는 삭제하고 객관적인 감경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 ② 인사위원회를 외부 위원 1/2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일련번호	7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재)안산문화재단	처분요구일자	통보받은 날	회신기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안산시 기관경고

제 목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관련부서(기관) (재)안산문화재단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재단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운영지침에 ‘업무추진비’는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일괄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사·홍보비’는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일반운영비를 말하는 것으로 초청장, 홍보유인물, 행사지원 시설·물품의 임차료, 강사료, 무료봉사 행사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등으로 집행 가능하나, 기관의 연찬회(워크숍 경비)로는 집행이 불가하다. 행사에 참여한 초청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 관련 기념품이나 기관 선물의 구입 등은 행사·홍보비에서 집행할 수 없고,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재단의 시무식·종무식 및 워크숍을 위한 식비를 집행할 경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관서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기자간담회 및 교류기관 선물 구입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재단에서는 [표]와 같이 재단의 시무식·종무식 및 워크숍 행사 후 식비 및 다과비용을 행사홍보비(행사운영비) 예산으로 집행하였고, 재단의 업무추진 관련 기자간담회의 식비와 국제문화교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 선물을 구입하면서 사무관리비 및 행사홍보비(행사운영비) 예산으로 집행하여 재단의 예산을 목적 외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예산 집행 부적정 내역 <생략>

관계기관 의견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목적 외로 집행한 상기 내역은 향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 기준에 따라 집행 하겠고,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교류 기관 선물 등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업무 추진비에서 적정하게 집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숙지하시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일련번호	8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재)안산문화재단	처분요구일자	통보받은 날	회신기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안산시 시정 요구

제 목 취득세 신고에 관한 사항

관련부서(기관) (재)안산문화재단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를 아래 [표]와 같이 구입하였다.

[표] ☰ 구입 내역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제1항5호에 따르면 총배기량 또는 정격 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정의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 장치를 사용한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2조(정의)에서는 원동기(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 장치)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 정의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에서는 차량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貂**를 구입한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추어 안산시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재단에서는 **貂**를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감사종료일 현재까지 취득세 신고·납부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법령에 해당하는 자산 구입시 자산등록 및 취득세를 누락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재단에서 구입한 **貂**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해당 취득세에 발생된 가산세(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취득세를 미신고한 책임이 있는 직원이 부담하게 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9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재)안산문화재단	처분요구일자	통보받은 날	회신기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안산시 시정 요구

제 목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관련부서(기관) (재)안산문화재단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게 아래 기준에 의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구분	지급률 또는 지급금액	지급대상	관련법	지급일
시간외 근무수당	·통상임금×1.5/209×시간	·2급이하 직원 대상 (예산의 범위내 지급)	근로기준법	매월 10일

2. 관계법령(판단기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근로시간)에 따르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16100, 1991. 11. 6.)과 대법원 판례(2018도16228, 2019. 7. 25.)에 따르면,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지각·조퇴·휴일·휴가 등 실제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단의 「보수규정」 제22

조(시간외근무수당)에 따르면 근무명령에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게 통상시급에 50%를 가산[통상임금 × 1.5 / 209 × 시간(근로기준법 준용)]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단의 「복무규정」 제14조(근무시간)에서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통상시급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재단에서는 연가·병가·공가 등을 사용하여 실제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로에 대해서도 통상시급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앞으로는 관련 법령 해석을 명확히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하겠지만, 재단은 그동안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결정해온 바 노무법인 자문 결과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나, 기존 판단 방식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기지급된 내역에 대해서는 재단과 구성원 간의 신의 유지,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제도적 정비와 재발 방지 중심의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감사자 검토 의견

재단의 기존 판단과 시행(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은 근로시간에 대해서 통상시급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이 법 위반은 아니다.(법은 통상시급의 100% 이상만 지급하면 되고 그 상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재단이 근거 없이 공공재정을 집행하였다는 점이다. 즉,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근거가 없음에도 그렇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경우 사용자의 결정으로 가산 여부와 가산율 등을 정할 수 있고,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묵인하여 왔다면 가산 지급이 노동관행으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단은 공공재정 관련 법령을 따라야 하는 공공기관이다. 재단이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수당 포함)는 그 재원이 안산시의 출연금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제2조¹⁾제5호의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한다. 또한, 재단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 것은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²⁾제6호라호의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³⁾제1항에 따르면, 이 경우(잘못 지급한 경우) 행정청(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을 포함한다)은 잘못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한편, 재단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게 된 경위를 보면, 보수 지급 업무관련자들이 법 및 관련 규정과 개념을 오해하여 발생되었고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이와 같이 잘못 지급되고 있는 점에 미루어 재단 보수 지급 업무관련자들에게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또한, 잘못 가산된 수당금액을 지급 받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귀책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들에게 잘못 지급된 금액에 대한 이자까지 환수할 수는 없다.

1)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다.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법인·단체의 기준·규정·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6호라목의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자 까지 환수한다.

위를 종합할 때, 재단은 잘못 계산(가산)되어 이미 지급된 수당액(연장근로로
착오 적용된 근로시간 × 통상시급 × 0.5)을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재)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감사 대상 기간 동안 착오로 과지급한 [붙임]의 시간외근무수당 *,*,*원을 회수한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 ② 자체 확인 · 점검을 통하여 소멸시효(5년)가 경과되지 아니한 감사 대상 기간 외의 기간(2021년 1월 지급분부터 감사처분 통보일까지) 동안 착오로 과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을 회수한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붙임] 시간외근무수당 부적정 지급 내역 <생략>

일련번호	10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기관 (처리할 부서)	(재)안산문화재단	처분요구일자	통보받은 날	회신기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안산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시설공사 설계서 미작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관계기관(부서) (재)안산문화재단
내 용

1. 업무개요

(재)안산문화재단은 경관을 개선하고 미술관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아래 [표 1] “공사 계약 현황”과 같이 공사 업무를 추진하였다.

[표 1] 공사 계약 현황 <생략>

2. 설계도서 미작성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2022. 1. 7. 시행, 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조건 제2절 공사계약의 체결 2. 계약문서에는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및 물량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용어 정의에 따르면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에 따르면 발주청 또는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인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고 공사시방서는 표준 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정 가격의 결정기준)제1항제2호에 따르면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 및 사업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설계서를 작성한 후 설계서의 내용에 따라 해당 공사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하여 예정가격(설계금액)을 확정한 후 발주하고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위 [표 1] 공사를 시행하면서 현장 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아 시공 물량의 상세한 산출 근거를 알 수 없고, 물량 증감에 따른 설계 변경도 할 수 없게 하였으며,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등의 사항을 기술한 표준·전문 시방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업체의 견적을 받아 설계금액을 확정하여 발주하였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적용범위)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기준 제5조(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에 따르면 계상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알려야 하며, 발주자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대상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대상액”은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대상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 계상기준에 따라 해당 비율(요율)을 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관급자재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을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이라면 대상액에 포함되며,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총공사금액은 재료비(발주자가 따로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한 금액),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를 추진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고 공사도급내역서에 별도로 표시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위 [표 1] “공사 계약 현황”과 같이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내역서에 계상하여 별도로 표시를 한 후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원을 계상하지 않고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향후 공사 계약 시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 공사계약 필요 서류를 작성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상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② 또한 설계도서 없이 부적정하게 공사를 계약하고 집행한 아래 관련자에 대하여 「직원 상벌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훈계” 및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주의)

일련번호	11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기관 (처리할 부서)	(재)안산문화재단	처분요구일자	통보받은 날	회신기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안산시 시정 요구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관계기관(부서) (재)안산문화재단
내 용

1. 업무개요

(재)안산문화재단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래 [표 1] “공사 계약 현황”과 같이 공사 업무를 추진하였다.

[표 1] 공사 계약 현황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따르면 도급인과 자기 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경비)제3항에 따라 경비의 세비목에 해당하는 비용,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반환 등)에 따르면 빌주자는 도급인이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계상 기준,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회계법」 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에 따르면 지방자치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준공서류 제출 시 계약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여부,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목적 외로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위 [표 1]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준공서류 제출 시 아래 [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내역”과 같이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내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등 총 ***원의 예산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내역 <생략>

관계기관 의견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준공서류 제출 시 계약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여부,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목적 외로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나, 준공 당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에 따르면 2020년 고시에 명기되어 있는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은 삭제되어 있으며, 2022년 일부개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성 확대”에 따라 사용불가 내역을 나열한 [별표2]를 삭제한 것이다.

이에 부적정 사용내역 으로 표기된 ‘♣’ 는 안전시설비 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구입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향후 업무 처리 시 관련 법령을 면밀히 살펴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용불가내역 삭제와 관련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고용노동부 2022. 6.)에 따르면 사용불가항목(별표2)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일부 품목¹⁾ 외 기존 사용불가 항목의 경우 대부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은 사용불가 품목 및 주요사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재)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① 앞으로는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주의)
-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을 소홀히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공사비 ***,***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1)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의 20%이내 허용

일련번호	12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 ***
수감기관 (처리할 부서)	(재)안산문화재단	처분요구일자	통보받은 날	회신기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안산시 시정 요구

제 목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관계기관(부서) (재)안산문화재단
내 용

1. 업무개요

(재)안산문화재단은 수목 제거를 위해 아래 [표 1] “공사 계약 현황”과 같이 공사 업무를 추진하였다.

[표 1] 공사 계약 현황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¹⁾(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환경관리비의 세부 산출기준)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정의)에 따르면 환경 관리비는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구분하고, 환경보전비란 건설공사 작업

1) 환경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하여 산정

1. (환경보전비)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

중에 건설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해당시설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투입되는 작업비용 포함)을 말하고, 제6조(환경보전비 산출기준)에 따라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²⁾와 간접공사비³⁾를 병행하여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0조(정산)에 따라 발주자는 환경관리비 중 간접공사비의 사용내역(수량 및 비용)에 대하여 공사기성 또는 준공 검사 시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위 [표 1] “공사 계약 현황”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준공서류 제출 시 공사금액에 간접공사비로 계상된 환경보전비의 사용여부,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목적 외로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아래 [표 2] “환경보전비 부적정 사용내역”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준공서류 제출 시 미제출한 환경보전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등 총 **,***원의 예산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2] 환경보전비 부적정 사용내역 <생략>

관계기관 의견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향후 계약 준공서류 접수 시 공사금액에 간접공사비로 계상된 환경보전비의 사용여부,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목적 외로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도록 하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직접공사비 :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 운영 · 철거에 드는 손료, 공공요금, 재료비, 노무비

3) 간접공사비 :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 · 지도 · 훈련비, 인 · 허가비, 안내표지 설치 · 철거비, 환경관리비 사용계획 작성비 등

조치할 사항 (재)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① 앞으로는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주의)
- ② 환경보전비 정산을 소홀히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공사비 **, *** 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13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기관 (처리할 부서)	(재)안산문화재단	처분요구일자	통보받은 날	회신기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안산시 통보·시정·훈계 요구

제 목 ◇ 철거공사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안산문화재단
 내용

1. 업무개요

(재)안산문화재단은 “◇ 철거 공사”를 통해 미술관 내 지붕의 환경 오염 물질인 ◇를 철거하고 재시공하여 쾌적한 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분담이행 방식의 계약 방법을 통해 아래 [표 1] “공사 계약 현황”과 같이 공사 업무를 추진하였다.

[표 1] 공사 계약 현황 <생략>

2. 공사비 과다 계상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이하 ‘집행기준’ 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설계변경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공사는 건설 표준품셈, 각종 시방서 및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당초 설계에 공사물량 및 공사자재 등이 설계상 착오로 과다 계상되었다면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위 [표 1]의 <연번 1>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처리비를 공사도급내역서에 반영하였으나, 제경비 및 보험료 등이 포함된 원가계산서에 별도 추가하여 설계서를 작성하였고, 이중 계상된 ⌂처리비는 집행기준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 비용을 감액하여야 하나, 아래 [표 2] “과다 계상된 사업비 현황”과 같이 *,***,***원을 과다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 과다 계상된 사업비 현황 <생략>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작성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따르면 도급인과 자기 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경비)제3항에 따라 경비의 세비목에 해당하는 비용,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반환 등)에 따르면 발주자는 도급인이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계상 기준,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 요청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와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구매집행 사진 등)로 제출된 해당서류의 진위여부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빙자료의 확인에 있어 1)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 하단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사실 조회’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회계법」 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에 따르면 지방자치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준공서류 제출 시 계약금액에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제도 시행(2022. 7. 1. 이후)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여부,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목적 외로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위 [표 1]의 <연변 1>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 상대자가 준공서류 제출 시 아래 [표 3] “전자세금계산서 허위작성 및 흠팩스 발급 사실 조회 현황”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및 청구하여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으나, 2025. 6. 20. 감사일 현재까지 전자세금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하고 있다.

[표 3] 전자세금계산서 허위작성 및 흠팩스 발급사실 조회 현황 <생략>

4.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이란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같은 법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건설폐기물 인계·인수방법 등)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총 배출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특별자치시, 특별 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의 위탁)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에 따르면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자는 「건설폐기물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를 위탁하거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은 소량폐기물용 마대를 사용하여 배출할 수 있으며,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소정 서식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공사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건설폐기물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를 위탁하거나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장 폐기물의 인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적정 처리여부를 확인한 후에 준공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위 [표 1] <연번 1>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계약내역에 계상된 폐기물처리비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처리를 위해 사용되었는지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받지 않고 준공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담당자의 관련 법령 등 업무 숙지가 미숙하였으며,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였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등의 사후 정산 과정 업무를 면밀하게 검수하지 아니하였고 허위로 제출된 세금계산서 등에 대해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관련 사항을 개선

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폐기물 처리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① 앞으로는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전자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항에 대하여 ♣♣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고, 관할 세무서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 따른 고발조치 요청 등을 검토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③ 또한 과다 계상된 사업비 *,***,***원, 전자세금계산서 허위작성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안전관리비 ***,***원등 *,***,***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④ 아울러 부적정하게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준공대가를 지급한 아래 관련자에 대하여는 「직원 상벌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일련번호	14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재)안산문화재단	처분요구일자	통보받은 날	회신기일	통보일 부터 60일 이내

안산시 주 의

제 목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관련부서(기관) (재)안산문화재단

내 용

1. 업무 개요

(재)안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한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등에 따라 공사 및 용역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2. 분할발주 부적정

가. ● 공사

재단에서는 시기에 따라 주기적인 전정 공사로 내방 고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 **[표1]**와 같이 ● 공사를 실시하였다.

[표1] 2023년 ● 공사 내역 <생략>

나. 관련법령(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행안부 예규”라 한다)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절 총칙 4.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의 집행에 따르면 단일공사란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 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동일 구조물 또는 단일공사로 볼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할하여 발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표1]** 연번 1의 경우 연번 2, 3과 준공일이 한 달 보름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볼 때, 시기적 필요(계절적 요인 등)에 의한 분할발주로 볼 수 있으나, 연번 2, 3의 경우 대상(●, ○)만 다를 뿐 동일 성격의 공사이고 계약일이 불과 2일 차이가 날 뿐 준공일이 동일하며 예산상 수선유지교체비로 단일 사업으로 볼 수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분할 발주하였다.

다. ○ 용역

재단에서는 **[표2]**와 같이 ○ 용역을 연 단위로 추진하고 있다.

[표2] ○ 용역 현황 <생략>

라. 관련법령(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행안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절 총칙 5. 분할계약 금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 · 물품 계약에 대하여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동일하고 보안 관련 유지보수 용역이라는 동일 목적의 사업인 단일사업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분할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3. 계약이행보증 확인 부적정

가. 관련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해야 하나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고 계약의 이행보증 방법은 지방계약법 제5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내는 방법과 공사이행보증서¹⁾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따라서 재단에서는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보증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를 징구해야 하나 **[표3]**의 계약의 경우 근거 없이 확약서만을 징구하였다.

[표3] 5천만원 이상 용역계약에 대한 계약보증 현황 <생략>

관계부서 의견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 향후 계약 시 통합발주가 가능한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 통합발주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 계약이행보증과 관련하여 이행보증 면제 대상 및 보증금 또는 보증서 징구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철저히 실시하여 누락이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① 앞으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분할발주를 하지 않도록 계약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통해 계약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1) 해당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일련번호	15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재)안산문화재단	처분요구일자	통보받은 날	회신기일	통보일 부터 60일 이내

안산시 개선요구

제 목 기부금 관리 및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관련부서(기관) (재)안산문화재단
내 용

1. 업무 개요

(재)안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한다.)에서는 기부금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사회 공헌 사업 운영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3.12.27. 「기부금 관리 및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2. 관련법령(판단기준)

「기부금품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부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을 말하고, 기품금품이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재단의 운영규정에 따르면 기부금이란 외부 단체나 개인이 재단에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현금 및 현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법률과 운영규정에 따라 기부금(품)은 반대급부가 없어야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표1]**과 같이 재단의 운영규정 제13조제2항에 기부금 채납 제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표1] 기부금 채납 제한 사항 <생략>

한편 기부금이 **[표1]**의 사항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는 기부 심의위원회에 대해 운영규정 제7조 제1항은 5인 이상 7인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같은 규정 제3항에 외부 위원은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이나 이에 준하는 전문가, 2.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학계, 언론계, 경제·경영 부분 관련 전문가, 3. 문화재단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공공부문 모금 전문가 중 재단 대표이사가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독임제에 반대되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¹⁾으로 한다. 민주성을 위해 의결 정족수²⁾에 대한 제한이 있고 효율성을 위해 위원의 수가 일정수³⁾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투명성을 위해 내·외부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부 위원의 수가 일정비율⁴⁾ 이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위원회의 투명성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재단의 운영규정에 의하면 내부위원인 5인이 당연직 위원이고 위원회가 5인 이상에서 7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어, 내부 위원만으로 의결이 가능하고 실제 2024. ○. ○. 개최된 ◇ 지정기부금품 약정 체결 시 외부위원 없이 내부위원 5인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심의 안건 2건을 의결하였다.

한편 2024. ○. ○. 안산문화재단 기부 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을 통해 ◇을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2) 재단「운영규정」제8조제3항 주관부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심의위원회를 소집 및 재적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위원의 수는 원칙적으로 20명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단「운영규정」제7조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4항 안산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이하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외부 위원으로 하여 총 6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의결 정족수가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으로써 외부 위원은 실제 의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위원회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위원회 구성 인원 수 확대와 동시에 내부위원에 대한 일정 비율을 명시하여 현재 규정보다 위원회의 취지에 맞는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관계부서 의견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 기부 심의위원회 투명성 향상을 위해 상기 적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목적에 맞는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운영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위원회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현 규정을 검토해 주시고 개정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일련번호	16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재)안산문화재단	처분요구일자	통보받은 날	회신기일	통보일부터 60일 이내

안산시 통보

제 목 성과급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관련부서(기관) (재)안산문화재단

내 용

1. 업무 개요

(재)안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한다.)에서는 임직원의 근무의욕 고취 및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2. 관련법령(판단기준)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상편성 지침」에 따르면 성과급은 경영평가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개인별 또는 부서단위 근무성적·업무성과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각 기관의 내규로 규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재단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년도 2개월 초과 근무한 임직원에 대해서 근무성적 평가 70%와 재단 기여도 평가 30%를 기준으로 개인별 근무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근무성적 평가는 연 2회 근무성적 평가 평균점수로, 재단 기여도 평가는 절대 평가 방식으로 직원상호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표1]**과 같이 지급등급과 지급률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해당 평가는 평가자별로 평가자 3명 선정 후 6가지 평가항목에 각 5점씩 부여(총 30점 만점)하여 평가자 3명의 평균점수로 산정하고 있다.

[표1] 지급등급 인원비율 및 지급률 <생략>

한편 안산시 2025년 상반기 다면평가 운영계획에 따르면 피평가자를 일반직군 5, 6, 7급 총 ○○○명으로 하고 평가자를 무작위로 선정하되, 피평가자와 5년 이내 3개월 이상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상·하급자 중 최대 15명 이내로 하고 상급자와 동급자, 하급자의 비율을 1:2:2의 비율로 하며 현 소속과 전 소속 비율을 1:1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관계부서 의견 포함)

재단의 아래 [표2] 상호평가 평가항목을 보면 의사소통을 제외한 5가지 항목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함께 근무를 하지 않으면 평가 자체가 불가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어 근무성적 평가가 연공서열로 이루어 질 경우 상호평가가 등급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표2] 직원 상호평가표 평가항목 <생략>

따라서 업무와 무관한 요소(막연한 인상, 풍문, 개인적 이해관계 등) 등으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도록 명확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재단 상호평가의 경우 ①부서별(現 부서 직원 중 1명), ②직급별(全 부서 동일 직급 직원 중 1명), ③업무관련성(全 직원-공무직 제외)을 고려, 평가자를 무작위로 3명을 선정하여 구성하고 있다. ①과 ②의 경우 모집단에 대한 제한을 통해 직·간접적인 업무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으나 ③의 경우 순환보직을 통해 동일 부서에서 근무했을 것이라는 전제로 한 기준으로 재단의 설립(2013년 1월)시기를 감안하면 일용 타당한 부분이라 여겨지나 신규직원의 경우 동일부서 미 근무자를 평가할 수 있고 설사 근무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피평가 직원의 직급(승진 등), 업무의 곤란도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③기준에 대해 시간적 제한(예를 들어 5년간 근무한 직원 중 ①과 ②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을 포함한 모집단의 변경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또한 직원들이 주체로 상호평가가 이루어지는 만큼 재단에서 기 실시(2025년 6월)한 직원들의 설문결과 등을 평가 방법의 대안으로 반영하는 방법 등도 고려 될 수 있음.

관계부서 의견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 성과급 지급을 위한 개인상호평가 시 피평가자 선정은 ①부서별, ②직급별, ③업무연관성(공무직의 경우 직종별, 근무지별) 순으로 자체 기준을 정해놓고 랜덤으로 3명을 선정하였습니다.
- 재단 일반직 직원의 경우 성과급 지급 대상자가 50명 정도이며, 무대기술인원 약 15명을 제외하고 순환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 설립 이후 거의 모든 직원들이 동일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별, 직급별, 업무연관성을 기준으로 선정했을 경우, 피평가자의 업무에 대해 충분히 평가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위와 같은 평가 기준을 가지고 직원상호평가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들의 직원상호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성과급 등급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지난 6월, 2025년(2024년 성과) 성과급 지급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결과에서 나온 직원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과급 지급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치할 사항 (재)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① 상호평가에 대해 기 실시된 설문조사와 평가자 선정 시 시간적 제한에 대한 요소 등을 재단 상황을 감안하여 검토해 주시고
- ② 차기 성과급 지급 계획 및 지급 결과에 대해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17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재)안산문화재단	처분요구일자	통보받은 날	회신기일	통보일부터 60일 이내

안산시 주의·훈계 요구

제 목 공사·용역 준공·완료 이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관련부서(기관) (재)안산문화재단
내 용

1. 업무 개요

(재)안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한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등에 따라 공사 및 용역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2. 검사조서 미작성

재단에서는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상대방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끝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 업무를 하였다.

가. 관련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17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65조에 따르면 검사는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¹⁾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계약금액이 3천만원 미만의 경우 검사조서를 생략할 수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따라서 재단에서는 3천만원 이상의 계약의 경우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계약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아래 **[표1]**의 계약의 경우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표1] 검사조서 미작성 현황 <생략>

3. 대가지급 부적정

재단에서는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 상대방과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가. 관련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 · 물품 · 용역, 그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²⁾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아래 **[표2]**의 계약의 경우 지급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표2] 대금지급 지연 현황 <생략>

1) 현재 7일 이내 (행정안전부에서는 2020. 7. 15.자로 「지방계약법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2) 현재 3일 이내 (행정안전부에서는 2020. 7. 15.자로 「지방계약법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4. 하자검사 미실시

재단에서는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공사 등 준공 이후 주기적인 하자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 관련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2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르면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11절 3. 하자검사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 검사로 갈음할 수 있고,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방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방이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연 2회 하자 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종검사를 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아래 **[표3]**의 계약의 경우 정기(최종)하자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표3] 하자검사 미실시 내역 <생략>

관계부서 의견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 향후 계약 사무 처리 시 관계법령 및 고시 등 업무연찬을 통해 신속,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다.
- 또한 정기(최종)하자검사를 통해 하자 확인 및 보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며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① 향후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검사조서 작성과 기간 내 대가 지급 및 주기적인 하자검사를 이행해 주시고 (주의)
- ② 2024년부터 준공된 공사에 대해 정기(최종) 하자검사를 미이행한 「관련자」에게는 「직원 상별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8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기관 (처리할 부서)	안산문화재단	처분요구일자	통보받은 날	회신기일	통보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

안산시 주 의

제 목 업무용 차량 교체(임차) 절차 소홀

관련부서(기관) 안산문화재단

내 용

1. 개 요

안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업무용 차량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 [표 1]과 같이 업무용 차량 *대를 보유·관리하고 있다.

[표 1] 공용차량 보유 현황 <생략>

2. 업무용 차량 교체(임차) 절차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 기준)

규칙 제5조(차량교체 승인)에 따르면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재단의 기존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요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검토조서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차량은 구입을 원칙으로 하나, 한시적인 기구 설치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을 ●으로 교체할 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요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검토조서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재단에서는 요청서와 검토조서의 첨부 없이 업무용차량 임차 계획만으로 ○을 ●으로 교체 및 임차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안산문화재단에서는 향후 차량 교체 시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검토 조서 작성, 교체 승인 등 절차에 누락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안산문화재단은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용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19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기관 (처리할 부서)	안산문화재단	처분요구일자	통보받은 날	회신기일	통보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

안산시 주 의

제 목 민원 관리에 관한 사항

관련부서(기관) 안산문화재단

내 용

1. 개 요

안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재단 홈페이지, 콜센터, 우편, 국민신문고 포털(문화예술과 경유), 정보공개 포털 등의 경로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민원을 처리·관리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 청구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판단 기준)

재단은 정보공개법 제2조(정의) 제3호 마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법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자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각 호¹⁾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보부존재 또는 진정·질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재단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감사범위 내 접수한 정보공개 청구 민원 ***건 중 **건을 지연 처리하였고, *건을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1] 정보공개 청구 민원 처리 부적정 명세 <생략>

3. 민원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판단 기준)

재단은 민원처리법 제2조(정의)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행정기관²⁾으로 동법 시행령 제22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에 따라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민원 처리와 관련 있는 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1) 제1호 :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제2호 :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이나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한편 재단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15조(가감점평정)에 따르면 가감점평정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공적 및 자격이나 현저한 결격사항에 대하여 이를 평정하는 것을 말하며, “내·외부 민원(불만사항) 발생”의 경우 회당 1점을 감점한다.

또한 재단 「안산문화재단 인센티브 운영 규칙」 제6조(인센티브 지급) 및 [별표]인센티브 지급기준에 따르면 이사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 별표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장기·집단민원 해결 등”의 경우 우수시책 추진 및 시정·재단 발전 유공자 심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반면 재단 「직원 상별 시행규칙」 제12조(징계양정기준) 및 [별표 1의2]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 기준에서는 “민원처리 및 문서처리 지연”의 경우 견책이상으로 징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 상황을 근거로 민원 처리와 관련 있는 직원들에게 징계·포상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재단에서는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³⁾, 감사범위 내 정보공개 청구 민원 처리 **건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민원 처리와 관련 있는 직원들에 대하여 징계·포상 기준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안산문화재단에서는 정보공개법과 민원처리법 등 관계 법령을 숙지 및 준수하여 부적정 처리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민원 처리 사무 규칙」 제정을 통해 정기적으로 민원의 처리상황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직원의 징계 ·

3) 2025년 민원 감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내·외부 신고 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포상 등의 사후 조치로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관리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통해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 정기적으로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점검해 직원의 징계·포상 등 사후 조치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20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기관 (처리할 부서)	안산문화재단	처분요구일자	통보받은 날	회신기일	통보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

안산시 권고

제 목 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관련부서(기관) 안산문화재단

내 용

1. 개요

안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소속 임·직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복지제도의 만족도 제고를 통하여 업무능률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다.

2. 맞춤형 복지제도 실태조사 미실시

가. 관계법령(판단 기준)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지급하며, 선택적 복지제도는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자치단체 수준에서 운영한다.

그리고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및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하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또한 「안산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 제14조(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복지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맞춤형 복지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단 규칙 제1조(목적) 및 제2조(기본원칙)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제도는 직원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직원들의 자기계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보장과 지원급부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규칙 제15조(실태조사)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복지만족도와 복지수요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 시 반영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재단에서는 자체 규칙에 따라 임·직원들의 다양한 선택권 부여와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만족도와 복지수요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반영하지 아니하고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규칙」에 따라 예산편성 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임·직원의 복지수요를 충족하는 맞춤형 복지 제도를 설계·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안산문화재단은

- 임·직원에 대한 복지만족도와 복지수요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일련번호	21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기관 (처리할 부서)	(재)안산문화재단	처분요구일자	통보받은 날	회신기일	통보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

안산시 개선 요구

제 목 공연장 대관료 부과 부적정
 관련부서(기관) 안산문화재단
 내용

1. 개요

(재)안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재단 「대관규정」 및 「공연장 대관규칙」 등에 따라 ♠, ♣, ○, △, □에 대하여 대관 신청을 승인하고 대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휴무일 가산금 부과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 기준)

재단 「대관규정」 제2조(대관의 정의) 제1항 및 제3조(대관종류) 제4항에 따르면 대관이라함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대 시설을 재단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사용목적에 따라 공연대관, 준비대관, 연습대관, 철수대관과 공연목적 이외의 기타대관 및 전시를 위한 전시대관 등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는 대관시스템 운영 및 ♠의 대관을 담당하고 있으며 ●는 △, □는 ○, □, ■은 ♣의 대관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8조(사용료 등) 제1항에 따라 사용료는 인건비, 유지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고 ♠과 ○는 휴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대관일정 변경은 공연대관료의 20%를 가산한다고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①, ②에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공연대관료’에 대하여 동일하게 휴무일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①, ②에서는 아래 [표 1], [표 2]와 같이 가산금 부과 기준을 달리 산정하여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표 1] ◇, △ 사용료 <생략>

[표 2] 휴무일 가산금 부과 예시 <생략>

3. 일정변경에 따른 할증료 부과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 기준)

재단 「대관규정」 제2조(대관의 정의) 제2항 및 제8조(사용료 등) 제4항에 따르면 사용자란 재단의 대관승인을 받아 재단과 대관 계약을 체결한 개인이나 단체를 말하며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이의 예외조 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단 「공연장 대관규칙」 제13조(내용변경 및 일정변경)에는 사용자는 대관신청 시 명시한 내용에 따라 공연 등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7호)를 제출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일정 변경 시에는 기본사용료의 20%를 할증료로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별표] (재)안산문화재단 사용료에서도 ◇ 및 △의 대관일정 변경은 공연대관료의 20%를 가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아래 [표 3]과 같이 사용자의 사정으로 대관기간을 단축한 경우에 대하여 계약금이나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의 20%인 할증료를 차감한

후 차액을 반환하였어야 함에도 할증료를 부과하지 않고 미사용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표 3] ◇ 대관일정 변경(단축) 내역 <생략>

관계기관 의견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① 휴무일 가산금 산정과 관련하여 향후 공연대관료의 20%에 대해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일원화하며, 2026년 통합 대관시스템 고도화 작업(시스템 개선작업)을 통하여 자동계산방식을 적용하여 대관료 산정이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② 일정변경에 따른 할증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할증료 부과 기준을 대관기간 외 일정변경에 한하여 부과하며, 대관기간 단축 및 연장 시 할증료 부과가 되지 않음을 규정에 명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향후 공연장의 휴무일 대관료를 「대관규정」에 따라 모든 공연장에 대해 동일하게 공연대관료(최종 대관료)에 20%를 가산하여 부과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휴무일 가산금을 공연대관(1회 기준) 사용료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하여 주시고 (주의, 개선)
- 일정변경에 따른 할증료 부과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제시한 의견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일련번호	22	감사자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제)안산문화재단	처분요구일자	통보받은 날	회신기일	통보일부터 60일 이내

안 산 시 통 보

제 목 휴가에 관한 복무규정 개선

관련부서(기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복무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복무관리를 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VI.복무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복무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자체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참고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특별휴가는 법률상 규정된 휴가 이외에도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휴가의 종류·일수·요건·방법 등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재단 「복무규정」 제4절 휴일 및 휴가에 따르면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특별유급휴가, 공가, 병가, 포상휴가, 특별휴가, 청원휴가, 생리휴가, 자녀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로 구분하며, 같은 규정 제52조에 따르면 재단은 임신한 여성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허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12항에 따르면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VIII.휴가 -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 라. 특별

휴가 - (8)임신검진휴가에 따라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임신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최초 신청 시 신청자는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임신검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재단의 「복무규정」을 확인한 결과, 임신한 여성 직원이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허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휴가의 종류를 정하고 있지 않아, 아래 [표]와 같이 임신한 여성직원이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공가 등을 사용하고 있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표]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사용 내역 <생략>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참고하여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의 건강진단을 위한 임신 검진 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임신한 직원이 특별휴가 등을 사용하여 임신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참고하여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23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제)안산문화재단	처분요구일자	통보받은 날	회신기일	통보일부터 60일 이내

안산시 주 의

제 목 휴직자 복무관리 소홀
관련부서(기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인사규정」에 따라 휴직한 직원에 대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점검 등 휴직자 복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재단 「인사규정」 제32조의3에 따르면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휴직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으로부터 [별표4]의 휴직자 근무실태 자체점검 결과를 매년 반기별로 제출받아 휴직자의 복무상황을 정기점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32조의4에 따라 대표이사는 휴직중인 직원이 휴직 기간중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속직원이 휴직을 목적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하며, 휴직을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휴직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은 매년 반기별로 휴직한 직원에 대하여 해외체류 여부, 영리업무 종사 여부 등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아래 [그림] “휴직자 근무실태 자체점검 결과”를 인사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제출받아 휴직중인 직원의 복무상황을 정기점검하여야 한다.

[그림] 휴직자 근무실태 자체점검 결과 <생략>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재단의 휴직자 복무상황 점검 현황을 확인한 결과, 재단에서는 2024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휴직자에 대한 복무상황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에서는 「인사규정」에 따라 현 휴직 중인 직원부터 복무상황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직자 복무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